

제조물 책임제도의 현황

강 창 경

(한국소비자보호원 수석연구원)

1. 제조물 책임의 입법 배경

최근 결함상품에 의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져오는 소비생활의 피해가 점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실리콘 유방수술의 부작용 사건, 장난감 총기에 의한 눈부상 사건, 녹즙기에 어린이 손가락이 잘린 사건, 뇌염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건,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상해 사건, 자동차 안전벨트 불량으로 인한 상해 사건, 불량 건강식품에 의한 부작용 사건 등이다.

정부의 소비자 보호기관이나 민간소비자 고발센터에 이와같은 사건이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관련 판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언론기관에서도 이를 중요한 뉴스로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는 등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 안전에 심각하고도 광범위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관련 상품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제조물 책임제도가 있다.

이른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라 함은 상품의 제조자 등이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 피해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책임을 말한다. 제조물 책임은 일찌기 미국에서 발전하였으며, 결함상품에 의한 소비자 안전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구제함에 그 취지가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 일본, 유럽 각국은 물론 중국 등 개발국가마저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오늘의 고도 산업사회에서는 상품의 종류가 증가하고 상품의 성질·성능·성분 등을 일반인이 제대로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되었다. 또한, 상품의 유통경로도 복잡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위험성도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상품의 생산은 제조자, 그 판매는 유통업자(매도인), 그 소비는 소비자라는 거래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로써 소비생활의 안전은 상품을 설계·제조하는 제조자 등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실제 결함상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위험을 예견하여 회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소비자는 종종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인식

하게 되었으며, 또한 결함상품에 기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결함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조자가 져야 한다는 제조물 책임정신이 새롭게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행법의 적용으로는 결함상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제조물 책임정신을 구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가간 교역이 증대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조물책임정신을 정면으로 수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상품안전을 위한 사전 간섭인 행정규제를 줄여 보자는 측면도 같이 고려하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무리한 적용보다는 특별한 법률의 입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법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현행법의 적용으로는 결함상품에 의한 피해구제가 어렵다.

결함상품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는 민법 또는 상법상의 계약책임법리 또는 불법행위 책임법리 등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결함상품의 매도인에게 불완전 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의 적용은 다음의 문제가 있다.

첫째, 피해자가 계약법상의 불완전 이행책임을 매도인에게 추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상품결함과 불완전 이행을 같이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매도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점, 단순한 상품 판매자로서 피해 원인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에게 결함상품에 의한 확대손해까지 책임을 지도록 법리를 구성하는 것을 거래현실에서 볼 때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이 있다. 여기에서 피해에 대한 변제능력이 실제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당위가 있다.

둘째, 피해자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불완전 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 매도인이 책임지기에 가혹하다는 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확대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단기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점이 있다. 더욱이 결함과 하자는 개념상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하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하자담보 책임도 피해의 구제에는 효용이 없다.

셋째, 피해자가 제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계약법에서와 달리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계약법리 적용의 한계를 일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법상의 일정한 책임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문제로 된다. 즉 위법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 오늘날에는 상품의 성능, 성질, 위험성 등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제조자의 손에 있다. 소비자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실정에서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그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불법행위법에서의 위법성 범위에 결함개념을 포함시키는 것도 불법행위법리를 너무 넓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따라서 고도 산업사회에서 새로이 문제가 된 결함상품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리로 불법행위법리를 채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제조물 책임정신이 싹트기 이전에 구성된 불법행위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 구성에 무리가 오기 때문이다. 요컨대 새로운 시대현상에 알맞는 새로운 법리구성이 요청되고 새로운 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결함상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마저도 일관된 법원리에 따른 것은 아니다. 또한, 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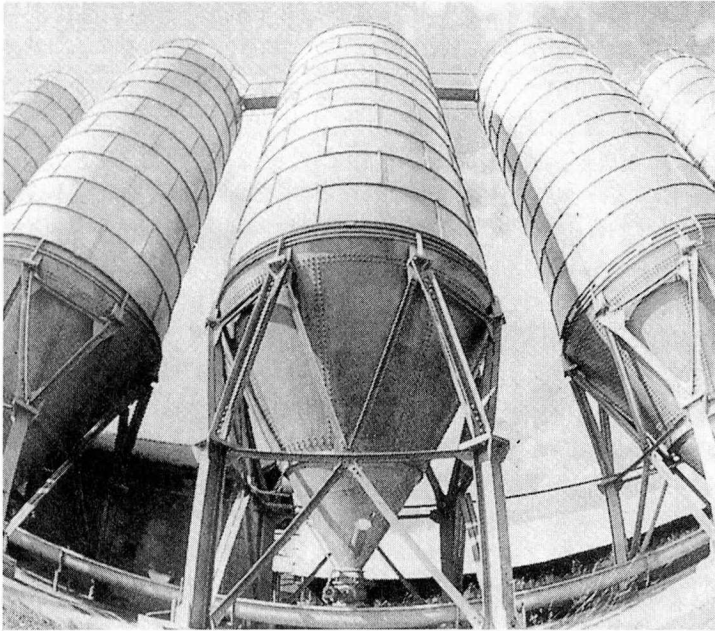
이 적극적인 판결을 하려고 하여도 현행법의 법리구성으로는 새로운 책임논거를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으로는 결함상품 제조자에 대한 직접청구 또는 확대손해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매수인이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 사실상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품의 제조자가 직접 일상 소비생활자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제도는 현대산업사회에 적용하는 새로운 제도로 피해자의 구제를 보다 손쉽게 한다.

3. 제조물 책임제도의 도입은 우리기업의 국제적 경영활동에 기여한다.

고도 산업사회에 이른 오늘의 경제실정에서 결함상품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선진 외국의 경우 이미 정착되어 있다. 소비자는 상품의 성분, 성능, 제조공정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알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여도 소송수행 및 사실입증 등에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국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입법은 제조물 책임에 관한 법제의 국제적 통일운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는 1973년 제조물 책임에 적용할 법률에 관한 조약안을 채택하였다. EC에서는 여



러 차례의 초안을 거쳐 1985년 7월에 제조물 책임에 관한 EC 지침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오늘날 많은 국가의 입법지침이 되었고 대다수 EU 국가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제조물 책임법의 국제적 통일은 국내 소비자 보호의 수준이 국제수준으로 촉진될 수 있다는 점, 제조자 사이에 경쟁이 확보된다는 점, 그리고 국가간의 자유로운 상품교역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가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그 입법수준이나 내용은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맞추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상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나 기타 이와 관련한 여러가지 기업전략은 국제화 또는 세계화 되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선진국의 상품에 대한 안전성 수준에 우리 기업은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배상제도나 위험예측 및 상품개발 전략도 새로이 구상하여

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 기업의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발전 특히, 국제시장 적응력을 향상시킴에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할 것이다.

4. 기업 스스로의 품질경영이 정착되어 과도한 행정간섭을 줄이게 한다.

현재는 상품의 안전성 등 품질관리를 기업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가 하나하나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간섭은 여러가지 이유로 행하여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을 사용하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기업에 맡길 수 없다는 불신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결함상품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장치가 미흡하여 사전피해 차단장치인 행정간섭이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제조물 책임제도는 사후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앞으로 상품생산과 교류가 급진전

되는 사회에서는 사전 행정규제에 한계가 올 것이고, 이는 결국 사후구제로의 정책전환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생존차원에서 기업 스스로 상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품질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안전성 등 품질관리에 관한 행정간섭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이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된다.

5. 맺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한국 소비자보호원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정부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1995년 정부의 소비자 보호 종합시책에서 그 입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조물 책임제도는 결함상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품질경영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이 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리라 믿는다.

다만,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커다란 부담을 줄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기업은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비자 피해 배상기구를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물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면 우려할 만큼의 부담은 없을 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기업에 보다 나은 제품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를 직시하고 소비자 안전을 기업의 주요 경영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㉞)